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선출방식 정비〉

■ 김진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7136호)

2022. 9.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진표 · 우원식 · 변재일 · 김상희 · 김영주 · 전해숙
설 훈 · 고용진 · 박재호 · 윤호중 · 신정훈 · 김병주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2. 9. 1.

3. 회 부 일 : 2022. 9. 2.

※ 의안번호 : 1713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정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기한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임기만료일 후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회의장단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은 실질적으로 각 교섭단체 또는 정당 간 합의를 통하여 상임위원장등을 내정하고 내정된 후보를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등이 선출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후 7일에 집회하여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함(안 제5조 및 제15조).

나. 상임위원장등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석 수 기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신청한 상임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함(안 제41조 및 안 제4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임기만료일 후 7일에 후반기 첫 임시회를 집회하여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후반기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게 하는 한편,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등”)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상임위원장등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법정 선거기한¹⁾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가 신청한 우선순위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현행 규정과 개정안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임시회 집회일 (제5조)	- 총선 후 첫 임시회: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 - 전반기 의장 임기가 폐회 중 만료시: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	
	<신 설>	- <u>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후 7일에 후반기 첫 임시회를 집회</u>
의장단 선거 (제15조)	- 전반기 의장단 선거일: 총선 후 첫 집회일 - 후반기 의장단 선거일: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	
	<신 설>	- <u>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후반기 의장단 미선출시, 후반기 첫 집회일에 의장단 선거 실시</u>

1)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선거방법 및 선거일 (제41조, 제45조)	<신 설>	- 선거방법: 상임위원 중 임시의장 선거²⁾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일: 총선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 -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일: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만료일까지
		-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상임위원장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추천 - 전·후반기 상임위원장 법정 선거일 기한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장등 추천 ·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등의 수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분³⁾ ·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추천받으려는 상임위원장등의 우선순위와 추천의원 명단을 의장에게 신청 · 의장은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신청받은 우선순위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등 1명을 추천하고, 상임위원장등을 모두 배분할때까지 반복함 ※ 상임위원장 우선순위 등을 신청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의장은 신청한 교섭단체에 대해 먼저 추천하고 남은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함 -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만료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반기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등 선거 실시

2) 「국회법」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등의 수는 전체 의원 수에서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 정수로 하되, 전체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에서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지 아니한 상임위원장등의 수는 전단에 의하여 산출된 값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교섭단체에 하나씩 배분하며,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름

1. 원구성을 위한 후반기 첫 임시회 집회일 명시

현행 「국회법」은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선출일로부터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⁴⁾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⁵⁾ 교섭단체간 합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일까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표-2] 국회 원 구성 소요기간

구 분		국회의장 선출일	국회의장 선출기간(일)	상임위원장 선출일	원 구성 기간(일)
제14대	전반기	1992.06.29.	31	1992.10.02.	126
	후반기	1994.06.28.	30	1994.06.28.	30
제15대	전반기	1996.07.04.	36	1996.07.08.	40
	후반기	1998.08.03.	66	1998.08.17.	80
제16대	전반기	2000.06.05.	7	2000.06.16.	18
	후반기	2002.07.08.	40	2002.07.11.	43
제17대	전반기	2004.06.05.	7	2004.07.05.	37
	후반기	2006.06.19.	21	2006.06.20.	22
제18대	전반기	2008.07.10.	42	2008.08.26.	89
	후반기	2010.06.08.	10	2010.06.08.	10
제19대	전반기	2012.07.02.	34	2012.07.09.	41
	후반기	2014.05.29.	-	2014.06.24.	26
제20대	전반기	2016.06.09.	11	2016.06.13.	15
	후반기	2018.07.13.	45	2018.07.16.	48
제21대	전반기	2020.06.05.	7	2020.06.29.	31
	후반기	2022.07.04.	36	2022.07.22.	54

주: 국회의장 선출기간과 원 구성기간은 전·후반기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로부터 도과된 날짜 기준이며, 상임위원장 선출일이 복수일 경우에는 첫 상임위원장 선출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회사무처 「2020년 의정자료집」, 제21대 국회는 국회 회의록 참조

- 4) 「국회법」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5)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까지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의장 직무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⁶⁾ 임기만료일 후에 이루어지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 집회일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집회일에 대한 교섭단체간 이견이 있을 경우 국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후 7일에 후반기 첫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고, 임기만료일까지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후반기 첫 집회일에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상임위원장 역시 교섭단체간 합의 지연으로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가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후반기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전반기 첫 임시회를 집회하여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⁷⁾ 규정을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6) 「국회법」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7)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2.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 중 상임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인 동료 의원을 본회의에서 자유롭게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섭단체간 원구성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등을 내정하고, 내정된 후보를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형태로 운영해왔음.

따라서 원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 상임위원장등의 선거도 법정 선거기한(전반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집회일부터 3일, 후반기: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일)을 초과하게 되며, 결국 이는 전·후반기 국회 개시와 더불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기존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장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선출방식을 변경하면서, 법정 선거기한까지 상임위원장등 선출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신청을 받아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정 선거기한 내 미합의 시 의장의 상임위원장등 추천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 상임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위원장등의 정원을 할당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터 할당된 정원에 이를 때까지 순서대로 선호하는 상임위원장등을
신청하여 배분받게 되는 구조임. 이는 그동안 상임위원장등 배분 과정
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간 원구성 협상을 독려하고, 협상이 지연
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